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07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4년 2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4년 2월 11일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3. 주요내용

#### □ 취득

##### ○ 건물증축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면적 (㎡)	금액 (백만원)	소관 기관
1	Wee 스킨 증축	학생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45번길(행현리 산136)	2,620	4,979	본청

##### ○ 건물증축(변경)

연번	사업명	학교명	면적(㎡)			금액(백만원)			소관 기관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2	체육관 및 급식시설증축	서울신봉초등학교	1,844	1,844	0	2,315	3,395	1,080	동작
		관악구 양녕로 6나길1							

### 4.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계획안은 건물증축 2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 취득 (2건)

### ① Wee1) 스쿨 신축(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증축)

- Wee Project는 2008년부터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학생 예방 및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Wee class], [Wee center], [Wee school]로 체계화되어 있음.
- [Wee class]는 단위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잠재적 위기 학생에 관한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문제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하며, [Wee center]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여 심층적인 심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Wee school]은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교육 및 치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전국 Wee Project 시설 현황>

시.도	Wee class 수	Wee center 수	Wee school 수
서울	654	17	-
부산	359	5	-
대구	411	9	1
인천	288	7	1
광주	152	3	1
대전	199	5	-
울산	150	3	-
세종	21	2	-
경기	1,121	22	1
강원	272	13	1
충북	198	12	1
충남	190	14	2
전북	238	13	-
전남	345	20	-
경북	341	22	-
경남	424	11	1
제주	79	2	-
<b>합계</b>	<b>5,442</b>	<b>180</b>	<b>9</b>

1) Wee는 We(우리)+ education(교육)+ emotion(감정)의 합성어임.

## <세부사업 예산>

(단위: 천원)

Wee 스쿨 신축				합 계	비고
세부내역	사업내역	특별교부금	본예산(예정)		
공사비	건축비	3,000,000 <sup>2)</sup>	930,000	4,630,000	
	토목공사비		700,000		
용역비	도시군관리계획변경		100,000	349,000	
	설계비		199,000		
	감리비		50,000		
합 계		3,000,000	1,979,000	4,979,000	

- Wee school이 학교 부적응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근원적 치유와 적응력 향상을 통한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에 Wee school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 사업이라고 사료됨.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총 22개교의 위탁형 대안학교(공립:2, 민간:20)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공립 기숙형 대안학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구분	위탁형 대안학교				각종학교
	민간 위탁	공립 위탁			
		독립 직속기관형	직속기관 부설형	학교 부설형	
학 적	원적교 유지				학적 이동
교육과정	보통교과 1/3, 대안교과 2/3 편성				
교원 확보	위탁기관	파견	파견	증원 배치	정원 배치
다른시도(예)	(광주) 돈보스코	(충북)청명 학생교육원	(충남) 충무학교	-	(인천) 해밀학교

2) 교육부는 201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를 통지하였음.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은 독립된 활동 및 생활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교육 및 치유 장소로 적합하며 기존 학생교육원의 수련시설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이점이 있다고 판단됨.

## ② 서울신봉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 서울신봉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으로, 현재 서울신봉초등학교 급식실은 1995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물로 급식시설이 낡고 협소하며 HACCP시설 기준에 미흡한 상태이고 노후된 조리실에서 급식 조리하여 교실 배식을 실시함으로써, 적은 급식 및 학생 급식지도가 어렵고 쾌적한 교실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기존의 체육관 증축계획상의 1층 필로티를 학생식당으로 활용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배식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매년 체육관 증축시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한 후 학생식당 또는 급식실 등과 연계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설계비의 중복 지출이라는 예산낭비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바, 학교시설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변경계획이 아닌 기존사업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한 예외적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계획수립이므로 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3.24. ]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증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3. ] [법률 제12394호, 2014.2.13, 일부개정]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